

2025 사물의 의회

10대 요구안

1. [병합]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여 구성원들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호 의무를 포함하고, 미래세대 및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존엄한 권리를 인정하는 기후생태헌법을 제정한다.
2. [병합] 기후·생태 위기가 인간 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비용을 그 책임과 형평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생태계 회복, 기후 피해 보상, 정의로운 전환, 미래세대 지원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기후 불평등을 해소한다.
3. [병합] 기후재난에 취약한 이들의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위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전생애 기후정의 및 생태전환 의무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4. [미래세대] 기후·생태 위기 대응 및 주요 정책의 숙의와 결정을 위해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된 일반 시민과, 미래세대 및 비인간 존재들의 대리인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한다.
5. [병합] 개발 및 정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비인간 존재, 미래세대 존재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대리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국토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생태법인을 제도화하고 협치법을 제정한다.
6. [사회적약자]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공공 돌봄을 확대한다.
7. [농민] 농민의 권리와 식량 주권 실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한다.
8. [동물] 인간 종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공존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의무를 진다.
9. [숲]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안녕과 산림의 생태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산불특별법을 개정한다.
10. [대기] 과학적·국제적 책임을 반영한 전영역별, 전주기별, 연도별, 지역별 탄소 예산을 설정하고,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10대 요구안 외의 26개 요구안

[병합요구안]

1.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이 농민, 어민, 노동자, 소상공인, 건강취약계층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
2. 한국전쟁 종전을 비롯한 국제 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후난민 수용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에 힘쓴다.

[기업인]

3. 기업은 책임과 규모·업종·역량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길 요구한다.
4. 정부와 대기업은 순환경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5. 정부는 기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6. 정부와 대기업은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을 육성해야 한다.

[노동자]

7. 모든 인간과 비인간은 시혜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구에 상호의존적으로 거주하는 동료이자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이며,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노동자, 지역민, 비인간 등 다양한 주체가 받는 생태적 영향을 고려해 생태파업을 행할 권리가 있다.
8. 작업장 및 노동 과정의 탄소배출, 에너지/물 사용, 공간 활용 등 생태적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생태적 작업장을 구성하기 위해, 관련된 노동자, 기업, 지역민, 비인간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라.
9. 모든 인간과 비인간이 참여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기후시민의회를 설립하고, 탈성장, 커먼즈, 돌봄, 차별금지, 일자리 재분배 등 인간-비인간의 윤리적 관계를 상상하는 사회적 합의를 개발하라.

[농민]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친환경농어업 지원법을 개정하라.
11. 생태적 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주거 여건 증진과 문화 인프라 지원을 제도화하라.

[사회적약자]

12.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빈민,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적정 주거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대기]

13. 기후환경대기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가감없이 완전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4. 화석연료와 핵연료 등 채굴부터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 비순환 에너지원의 사용을 중단하고 자연의 법칙인 순환에너지원의 사용과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의무화한다.

[숲]

15. 행위 주체, 권리 주체이나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의 피해자인 산림 그리고 인간의 공존을 위해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다.

[해양]

16. 공해를 지구 구성원의 "공동 유산"으로 인정하고, 바다의 소유와 보존을 넘어선 '해양 정의'를 실현한다.
17. 어업인 및 수산업자에게 바다의 복원과 보호 활동(인증·관리·모니터링 포함)의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며, 해양 탄소흡수원, 생물다양성을 복원 및 관리하는 것에 관한 인센티브·책임 병행 제도를 도입한다.
18. 해양 생태 회복을 위하여 해양 환경 수용력에 기반한 '해양 이용 총량제' 를 도입한다
19. (탄소 흡수 등 자연 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기와 물, 민물과 바닷물, 연안과 대양 사이에서 물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동물]

20.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감각기관을 가진 다세포 진핵생물'로 재정의한다.
21. 인간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배상기금을 설치한다.

[기술]

22. 기술을 지구족의 관점에서 재정의한다.
23. 지구족의 관점에서 생태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수정하고 조항을 추가하여 전면 개정한다.
24. 기술 개발 및 운영 주체는 기술의 기획, 개발, 생산, 운영,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해당 기술과 인간 및 비인간 존재와의 상호영향의 관계망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한다.
25. 기술을 생태적 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위해요소를 예측하고 보완책을 설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한다.
26. 포용적 전환을 위해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가 지구의 회복력을 높이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과 방향의 원칙을 정한다.